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관련 수입식물 소독방법 안내

1. 식약처에서 2019.1.1.부터 시행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농약 사용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잔류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약성분은 0.01ppm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하여 사실상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관련해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시 잔류허용기준 설정여부에 따라 수입 식물 소독 훈증제 중 메틸브로마이드(MB) 사용에 일부 제약을 받습니다.

### < 수입식물 중 MB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

잔류허용기준(MB) 설정 품목('18.2)	잠정 잔류허용기준(MB) 설정 품목('18.10)	현재 수입되는 식물 중 잔류허용기준(MB) 미설정 품목
(8유형)	(4품목)	(6품목)
감귤류, 견과류, 열대과일류, 건조 과일류, 곡류, 서류, 건조채소류, 두류, 채소류	체리, 블루베리, 포도, 향신료	석류, 버섯류, 종실류, 차, 호프, 기타 식물류

\* 잠정 잔류허용기준(MB)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까지 MB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3. 현재까지 MB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식물에 대해 2019. 1. 1.부터 수입(상대국 선적일 기준) 시 소독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석 류(미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 수출국에서 선적전 MB 의무훈증 소독(상대국에 기 통보하였음)

- MB 의무훈증 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 수출국 MB 의무훈증은 MB 잔류허용기준 설정시 까지 적용

\* '19.1월말경 석류에 대한 MB 잔류허용기준 설정 예정(식약처)

○ 상대국에서 선적전 의무 MB훈증을 하지 않았거나 수입검역 과정에서 규제 및 잠정규제

해충 중 내부가해 해충(석류명나방 등) 검출시 MB소독이 불가하여 폐기(반송)조치 불가피

- 외부가해해충 발견시 에틸포메이트(EF) 훈증소독 처리

